

섹션 504, 하위 파트 D 및 하와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학부모 및 학생 권리

Hawai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하와이주 교육부)

귀하에게는 섹션 504에 따라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학교측의 통지를 받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섹션 504에 따른 귀하와 자녀의 권리, 그리고 해당 학교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으실 경우, 귀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섹션 504란 무엇입니까?

흔히 “Section(섹션) 504”라고 부르는 1973년도 제정 Rehabilitation Act(미국 재활법) 섹션 504는 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미국 연방법입니다. 섹션 504를 통하여 장애인 학생들이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제공된 바와 동일한 교육 기회 및 혜택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수혜 자격이 되려면, 학생은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생활활동에 실질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의 교육

자녀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적정 공교육의 무상 수혜할 권리.
-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차별 없는 참여하고 수혜할 권리.
- 학교의 비정규 수업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권리.
- 적절한 최대한의 선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더불어 교육받을 권리.
- 학교 수업 및 비장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바에 필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자녀에게 학교 활동 참여의 기회가 균등해지는 기숙사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비장애 학생의 학부모/법적 보호자에게 부과된 제비용을 제외하고, 교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를 무상 제공받을 권리.

자녀의 학생(교육) 기록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의 학생 기록의 검토 및 적정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Hawai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하와이주 교육부: 본 부처)에서는 복사비 면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의 학생 기록에 부정확, 허위, 또는 자녀의 개인정보 보호권에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측에 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 학교측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구해 거부를 놓고 이의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의 학생 기록 설명 및 해석을 요구하는 타당한 요청에 대한 대응.

섹션 504 절차

학교측에서 자녀가 섹션 504에 적격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자녀에게는 평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학교측에서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및 배치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통지받을 권리.
- 자녀를 아는 사람이 포함되고 보통 “504 팀”으로 부르는 그룹에서 내린 평가 및 배치 결정, 평가 정보의 의미, 그리고 배치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다양한 정보의 출처에 근거해 평가 결정을 내릴 권리. 정보 출처의 예로서 포함되지만 다음 항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예: 성적표 또는 학업 성취도 보고서, 학부모/법적 보호자의 입력 사항, 교사 입력 사항, 관찰 정보, 징계 회부, 및 형식 시험.
- 섹션 504에 따른 서비스의 평가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권.
- 균등한 교육 기회에 접근, 이용하기 위하여 적정 공교육을 무상으로 받는 데에 기숙사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할 때 섹션 504 계획을 개발할 권리.

자녀가 섹션 504에 따라 적격일 경우, 자녀의 프로그램이나 배치 과정에 일체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의 재평가를 포함하여 자녀에게는 정기적 재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의 섹션 504 계획에 관한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학교 행정 관리자 또는 복합지구 교육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섹션 504에 따라 자녀의 신원 확인, 평가, 교육 프로그램, 또는 배치에 관한 학교측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귀하는 중재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의 요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와 자녀에게는 청문회에 참석하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요청은 자녀의 학교가 속한 복합지구 교육감에게 서면 접수됩니다.

귀하에게는 본 부처의 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 (민권 규정 준수 사무국)에 차별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Hawai'i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Civil Rights Compliance Branch

Email: CRCB@k12.hi.us

전화: (808) 784-6325

또한 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 (미연방 교육부 산하 민권사무국: OCR)에도 접수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915 Second Ave, Room 3310

Seattle, WA 98174-1099

